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5. 27.

발 의 의 원 : 박갑상, 김성태, 김원규, 김태원, 김혜정, 박우근, 윤영애 의원(7명)

1. 제안이유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휴게 또는 보행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해오고 있음.

그러나, 공개공지의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포함된 정신병원은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나 통상적인 이용에 제한적인 시설이며, 특히, 공개공지 설치면적이 협소한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건축행위에 대한 주민권리제한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공개공지를 통한 공익의 실현과 건축행위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건축행정을 도모함(안 제3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의료법」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 ---------- ---------- ---------- ---------- ---------- ---------- ----------. 다만,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

② ~ ⑤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 8. 생략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생략
10. ~ 29. 생략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 ⑦ 생략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생략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생략